



# TP News Flash

## BEPS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확정

2016년 2월 18일

### 요약

G20/OECD의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방지를 위한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전가격 관련 문서제출의무를 강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을 2015년 12월 15일자로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후 국외특수관계거래가 500억원을 초과하고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은 2016년 사업연도부터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과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를 매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규정한 국조법 시행령 21조의 2가 2016년 2월 5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주체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기술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6년 2월 16일부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내용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및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로 구성됩니다(제21조의 2 제2항).

- 통합기업보고서: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자금조달활동 및 재무 현황
- 개별기업보고서: 개별법인의 조직, 사업내용,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와 해당 거래에 대한 가격산출 정보 및 재무 현황

또한 상기 보고서와 관련된 제출서류서식 및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첨참조)

이번 시행규칙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는 예상한 바와 같이 OECD BEPS Action Plan 13 Final Report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각국에서 동일한 Master File의 제출을 통하여 회사의 이전가격정책 및 Local File과의 일관성 있는 문서화 작업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대상법인

신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르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의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고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작성 및 제출의 대상이 됩니다.

국외특수관계거래 500억 초과여부는 기존의 국제거래명세서[별지 8호서식(갑)] 상 모든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를 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대상 특수관계법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법인으로 한정하고 작성의무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작성주체와 관련하여 2015년말 입법예고 되었던 시행령 개정 초안에서는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 사업방침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등에 있어 동일 사업군 내 최상위 단계 법인 등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해당법인이 국내에 없거나 해당 국가에서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 또는 현실적으로 최상위지배회사가 종속회사와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모든 보고서 작성을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최상위 법인으로부터 통합기업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 예외기준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소유, 사업방침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등에 있어 동일사업군 내 최상위 단계법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실무적 적용 상의 문제점들이 예상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OECD BEPS 지침 상의 국가별 보고서(“CbCR”) 작성주체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수정됨에 따라 작성대상법인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 졌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 21조의 2 제3항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의 1 제4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지배법인인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차상위지배회사가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삭제되고 최상위지배회사가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일견 해석됩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군의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최상위 지배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그룹사의 해외특판자거래를 관리할 수 없기에 최상위 지배회사가 직접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위의 개별적인 사업단위에서 차상위 지배법인이 통합기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 법인은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대상법인에 대한 명확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기업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합기업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최상위 단계 법인이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모회사 입장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고서 작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법인

소재지국에서의 규정 상 Master file 작성주체가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해외의 최상위 법인에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외투법인에서 동 보고서를 전달받아 제출하게 되며, 당해법인의 최종 연결재무제표 작성주체가 어느 모회사인지 그리고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Master file 작성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와 작성시기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포함한 국제 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은 당해 연도의 매출액과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매출액 또는 거래규모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여전히 국조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전가격자료 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시 (일반적으로는 세무조사) 이전가격보고서 (TP Documentation)의 작성 및 제출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 제출기한 및 연장

국제거래통합보고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빠른 편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보고서의 작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특히 외투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해외 최상위 법인의 Master File 작성기한이 한국의 제출기한보다 느린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국제거래통합보고서의 제출기준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국제거래규모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제출의무여부에 대한 확정이 안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합기업보고서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과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들은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은 제출기한의 15일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국조법 관련규정에서는 자료의 수집 ·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지, 기한연장은 관할 과세당국의 승인사항이라는 점과 연장되는 기한은 자동적으로 1년이 아닌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기한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제출 후 1개월내에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기한에 대한 주의와 함께 적절히 작성 및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맺음말

금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상 신고사항과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주체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신고사항의 경우, OECD BEPS Action Plan 13과 대동소이하게 규정되었으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주체 역시 OECD BEPS 규정 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최상위지배회사가 모든 종속법인에 대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런 경우에는 사업부문 별 차상위지배회사가 작성을 위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일은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포함한 주요기관과 법령의 개정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새로운 소식과 기업의 세무전략에 필요한 제안을 고객사들에게 적시에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에 대하여서는 저희 삼일회계법인 이전가격본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가격 및 BEPS 관련 연락처

#### 삼일회계법인 이전가격본부

이희태 부대표 3781-9083 htlee@samil.com	Henry An 전무 3781-2594 henryan@samil.com	전원엽 상무 3781-2599 wychon@samil.com	조정환 상무 709-8895 jhwancho@samil.com
양준규 상무보 709-8700 joonyang@samil.com	김영주 이사 709-4098 yjkim@samil.com	이경주 이사 3781-3289 kjoolee@samil.com	김찬규이사 3781-6415 ckyukim@samil.com

#### 삼일회계법인 BEPS TF

이중현전무 709-0598 alexlee@samil.com	전원엽상무 3781-2599 wychon@samil.com	조창호상무보 3781-3264 changhojo@samil.com	김영옥상무 709-7902 Yokim3@samil.com
--	--	--	---------------------------------------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